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위험근무수당 수령 부적정(직무 위험성 미충족)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7]의 지급 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5호, 2024.8.29.)
V.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고,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 ○○○ 외 31명은 '사무업무, ****실천사업, 서울** ** ** 사업, **** 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실 운영, ****관리사업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면서 2024. 1월부터 2024. 10월, 10개월 동안 아래 [표 1]과 같이 위험근무수당 총 11,116,7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1] 위험근무수당 지급 및 부적정 내역 : 별도 통보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으로 2024년 1월 이전부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이를 변경해야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며, 2024년 1월 이후 발령자도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이 지급되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 알게된 직원도 있었으며, 대부분은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면 안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수당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과다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11,116,74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 대상기간 이후 지급된 수당은 자체 반납처리